

2020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 모집계획



송 호 대 학 교

학 혼

- 정의로운 인간
- 창의적인 노력
- 사랑으로 봉사

건학이념

- 지성과 심성의 균형 있는 발달
- 기술과 신념을 겸비한 창의적인 현장실무 전문인 양성
- 21세기의 다양화된 교육수요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정립

교육목표

- 산학협력으로 지식정보화 적응력을 갖춘 창의적인 현장실무 전문인 양성
- 외국어 및 실험·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실무 능력 고취
- 봉사활동 강화로 정의, 노력, 사랑 정신을 갖춘 인성 중심 교육 지향

목 차

1. 전형일정
2. 모집 대상학과 및 정원
3.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4.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
5.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
6. 위탁교육의 학생 수 및 학급편성
7. 산업체의 범위
8. 위탁형태
9. 위탁생에 대한 모집학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운영
10. 위탁생의 선발
11. 합격자 선발기준
12. 위탁교육의 계약 및 경비부담 납부방법
13.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
14. 위탁교육의 운영
15. 위탁생의 신분과 졸업
16. 위탁생의 제적기준
17. 대학과 산업체와의 상호협력
18. '위탁교육 심의위원회' 운영

2020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

1 전형일정

구 분	내 용
접수기간	2019. 12. 30(월) ~ 2020. 1. 13(월)까지
접수방법	방문접수 및 온라인 송호대학 산업체위탁담당 (033 - 340 - 1090)
합격자 발표	2020. 01. 23(목)
합격자 등록	2020. 02. 06(목) ~ 2020. 02. 10(월)
미등록 충원 및 납부	2020. 02. 11(화)부터 ~ 2020. 02. 29(토)까지

2 모집 대상학과 및 정원

학 과 명		모집인원		산업체과명
		본 과	위탁생	
인문사회	사회복지과(야)	20	20	사회복지과(산)
자연	호텔외식조리과	28	20	호텔외식조리과(산)
예체능	스포츠레저과	31	20	스포츠레저과(산)
합계		79	60	

3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

구 분		내 용	비고
공 통		1.산업체 위탁 교육계약서	2부
		2.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	1부
		3.고등학교 졸업 증명서	중1부
		4.검정고시 합격증명서	
		5.재직증명서	1부
재직증명 관 련 서 류	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	1.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2.국민연금 가입확인서 3.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4.기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 류	1~4항 중 택1부
	4대보험 미가입자 직장인	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·어업인 등은 국 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 지원부, 어업인 허가 증명서 등),개인사업 자(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)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	문의 후 지원

4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

가. 지원자격 :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, **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* 이상인 자**(‘20.3.1 입학 일 기준) *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경력 합산

※ 모집당시 재직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0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

나. 유의사항 : 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위탁계약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리함. (단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 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)

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

자에 대하여는 입학 후라도 합격취소 및 제적 처리함

5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

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항 등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체의 장이 전문대학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교유가 하는 제도이며, 산·학·연·관 협력 및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

6 위탁교육의 학생 수 및 학급편성

- 가. 학생수 : 본 대학 정규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%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.
- 나. 학급편성 : 40명 단위의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 학급의 편성·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모집(주·야간 각각 산정) 입학정원의 10%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가능

7 산업체의 범위

-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하여야 함
 - 위탁생 선발 전 대학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이 어려운 경우,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지원생이 지원서와 함께 산업체 장의 위탁계약 의향서 제출 시 대학은 조건부로 위탁생 선발 가능
 - ※ 조건부 입학 시 학기개시 30일 이내 산업체와 미 협약할 경우 해당 산업체위탁생을 제적.
 - 산업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(조합)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, 그 단지 및 단체(조합)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
 - ※ 단, 근무지와 위탁장이 동일한 광역단위(시·도)내 있거나, 행정구역은 다르나 근무지와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(직선거리 아님)가 70km 이내여야 함
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 - 나.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- 제7조의 규정에 의거,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
- 다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- 라.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,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 - 마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 - 바.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, 상시 5인(사업주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 - 사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(사단법인, 조합 등)
 - 아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 - 자.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
8 위탁형태

- 가. 단독 위탁 : 위탁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본 대학에 학과 또는 계열별로 위탁
- 나. 연합 위탁 : 둘 이상의 위탁업체가 연합하여 본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

9 위탁생에 대한 모집학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

- 가. 모집학과 :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함
 - ※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체위탁교육시행 계획에 의거, 산업체위탁생은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.
- 나. 교육과정
 - 1) 혼합편성 : 본 대학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되,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 지향적 교육과정 운영
 - 2) 별도학급 :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함
 -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
 - 산업체의 교육적 요구사항 반영 등 신축적으로 편성·운영

10 위탁생의 선발

가. 지원 자격

-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나. 재직 기준

-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
-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'20학년도 개시일 전일('20.2.29)로 함
- 입학시점(매년 3.1)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.

※ 재직경력 9개월이란 ? :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(국민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함.

- 단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('20.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,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(대학-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)

나. 지원 및 전형절차 : 위탁생은 해당 산업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이 정한 합격자 선발기준에 의하여 입학이 허가됨.

11 합격자 선발기준

가. 지원 자격을 구비한 직장인이 해당 산업체장과 본 대학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의뢰된 자.

나. 해당학과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함.

- 1) 위탁교육지원 의뢰 인원이 많은 산업체(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)
- 2) 위탁계약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(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)
- 3) 연장자

다.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합격 및 등록에 관한 모든 권한이 부여됨.

12 위탁교육의 계약 및 경비부담 납부 방법

- 가. 위탁교육계약 : 위탁교육은 본 대학 총장과 산업체장(지역단위 기관장, 지점장 포함)과의 계약체결에 의함.
- 나. 경비부담 : 해당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음
- 다. 납부방법 : 위탁산업체에서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3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

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하되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.

- 가.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
- 나.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
- 다.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(전문대학 및 대학부설 특별과정)
- 라.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
- 마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
- 바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해당 시험 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
- 사.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관련 경력(실험·실습 관련 교과목에 한함)
- 아.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

14 위탁교육의 운영

- 가.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증명서로 확인(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)

- 나.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(입학시 사전 고지 필수) ※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함.

15 위탁생의 신분과 졸업

- 가. 산업체 위탁생은 본 대학 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며 본 대학 학칙을 적용함.
- 나. 위탁생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사정에 의하여 졸업을 하며 전문학사 학위 증서를 수여함.

16 위탁생의 제적기준

- 가.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, 위탁교육생 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.
- 나.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他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.
- 다.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
- 라. 채용을 전제로 고교-대학-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(‘20.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.
- 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.

17 대학과 산업체와의 상호협력

- 가.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과의 산학협동
-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

-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추진
- 정규 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추진
- 교육용 실험·실습 시설의 공동개발, 사용 및 교육용 기자재의 기증
-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
나. 산업체 시설 및 인사의 교수임용, 위촉

- 산업체 내의 강의 또는 실험·실습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 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·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음.
-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대학의 교원임용 규정 및 절차에 의거,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.

18 '위탁교육 심의위원회' 운영

가.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위탁교육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나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 및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10 이내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함.

다. 위원회 심의사항

- 1)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- 2) 위탁생의 선발기준
- 3)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- 4)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)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- 6) 학교와 위탁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- 7)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